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97 발의연월일: 2025. 2. 25.

발 의 자:정성호·김문수·김동아

김정호 • 박희승 • 최기상

주철현 · 임미애 · 이연희

안규백 • 윤후덕 • 송기헌

김남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된 자나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휴무처리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제재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군의 조사권 등 시정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 전담조직이 미비하여 예비군대원의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새로 신설된바, 장 기 소집되는 대원들의 휴무처리 등에 관한 별도 근거 규정이 필요함.

이에 국방부장관이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이익처우 사실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

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조직을 신설하며 이에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여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 시에는 군으로 국토를 방위하는 275만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함. 아울러 신설된 장기 비상근 예비군대원에 대한 휴무처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설 제도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 함(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신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3(장기 소집의 휴무 등 처리) 제10조와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예비군대원 중 연간 훈련 소집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훈련 소집기간을 휴무나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제10조의4(불이익처우의 시정) ①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방 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른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제1항에 따른 신고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개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 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제10조, 제10조의2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나 학교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국방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제10조의5(예비군권익보장센터) ① 국방부장관은 제10조의4에 따른 불이익처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예비군대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구성 및 운영, 업무의 범위

와 그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0조의3(장기 소집의 휴무 등
	처리) 제10조와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3에 따라 선
	발된 예비군대원 중 연간 훈련
	소집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는 그 훈련 소집기간을 휴무나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u><신 설></u>	제10조의4(불이익처우의 시정) ①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른 불
	리한 처우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0조와 제1
	0조의2에 따른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제
	1항에 따른 신고접수 후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개
	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 등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제10조, 제10 조의2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나 학교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 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국방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수사기관에 고 발할 수 있다.

제10조의5(예비군권익보장센터)

- ① 국방부장관은 제10조의4에 따른 불이익처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예비군대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군권익보 장센터의 구성 및 운영, 업무의

<신 설>

범위와 그 처리방법, 절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